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소금산업 관리 및 육성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해양수산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「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및 「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이 각각 개정(대통령령 제32475호, 2022. 2. 22, 공포·시행, 해양수산부령 제535호, 2022. 2. 22,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,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던 소금산업 실태조사, 연구 및 기술개발, 안전성 조사, 우수천일염 인증 등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여 국가가 직접 수행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예정,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,

4) 법제처 심사 전

대통령령 제 호

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오염물질 배출행위, 가축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약품 사용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

제1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57조제1호에 따른 청문

제15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23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1호의22까지 및 제1호의24부터 제1호의2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및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변경·시행, 관계기관 협의 및 통보

1의2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 구성 및 운영

1의3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

1의4.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훈련 실시, 교육훈련기관 지정·취소 및 예산의 지원

1의5. 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,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·취소 및 예산의 지원

1의6.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의 추진,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한 지원

1의7. 법 제11조에 따른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의 추진, 실용화 및 산업화를 하는 자에 대한 지원, 소금연구센터 설치·운영 및 이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소금연구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고시

1의8. 법 제12조에 따른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의 추진

1의9. 법 제13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단체의 설립인가 및 그 취소, 정관변경인가, 필요한 지원, 그 밖의 지도·감독

1의10.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·시행, 현대화 등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

1의11.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시 및 홍보, 홍보관 또는 교육관을 설치·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

1의12.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생산방식의 보전·계승, 보전·계승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

1의13.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금산지종합처리장 설치·운영, 설치·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

1의14.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생산지소금유통센터 설치·운영, 설치·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, 소금의 전자거래 활성화 추

진

1의15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요청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시행 및 그 시책에 따라 해당 소금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

1의16. 법 제19조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의 장려 및 필요한 지원

1의17.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 및 필요한 지원

1의18.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 마련 및 그에 관한 고시, 안전성 조사, 조사결과의 통보 및 필요한 조치의 요청, 안전성 조사의 위탁 및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

1의19.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 지정·고시 및 그 지정의 해제

1의20. 법 제30조에 따른 안전관리대책 수립·시행, 통보 및 필요한 조치의 요청

1의21.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

1의22.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,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

1의24.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지정, 검사실적 보고의 수리 및 자체규정 승인

1의25. 법 제36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사업무의 정

지 처분

- 1의26. 법 제3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제도의 실시
2. 법 제39조제2항·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생산기준 고시, 인증 신청의 접수, 교육훈련 및 필요한 기술·정보의 제공
- 4의2. 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천일염인증 갱신신청의 접수·심사,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·심사·승인
- 4의3.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·지정,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
- 4의4.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
8. 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천일염인증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
9.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이용의 협조 및 자료·정보의 제공 요청
10.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출입·조사·점검·검사·수거 등 (이 영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)
11. 법 제54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·운영 및 경비의 지급
12. 법 제5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청문
13.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(이 영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된다)
14. 이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의 고시

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「정부조직법」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임기관의 처분·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)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,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·도지사가 한 처분·행위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·도지사에 대한 신청·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시·도지사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,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(권한의 위임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1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5조(권한의 위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<u>1의2.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행위, 가축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약품 사용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</u>
2.·3. (생략) ② 시·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	2.·3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4. 법 제57조제1호에 따른 청문</u>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. 1.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	③ ----- ----- ----- -----. 1. <u>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 및</u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시행계획 수립·변경·시행, 관계기관 협의 및 통보

1의2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 구성 및 운영

1의3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

1의4.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훈련 실시, 교육훈련기관 지정·취소 및 예산의 지원

1의5. 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,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·취소 및 예산의 지원

1의6.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의 추진,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한 지원

1의7. 법 제11조에 따른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의 추진, 실용화 및 산업화를 하는 자에 대한 지원, 소금연구센터 설치·운영 및 이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소금연구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고시

<u><신 설></u>	<u>1의8. 법 제12조에 따른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의 추진</u>
<u><신 설></u>	<u>1의9. 법 제13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단체의 설립인가 및 그 취소, 정관변경인가, 필요한 지원, 그 밖의 지도·감독</u>
<u><신 설></u>	<u>1의10.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·시행, 현대화 등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</u>
<u><신 설></u>	<u>1의11.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시 및 홍보, 홍보관 또는 교육관을 설치·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</u>
<u><신 설></u>	<u>1의12.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생산방식의 보전·계승, 보전·계승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</u>
<u><신 설></u>	<u>1의13.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금산지종합처리장 설치·운영, 설치·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</u>
<u><신 설></u>	<u>1의14.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생산지소금유통</u>

<u><신 설></u>	<u>센터 설치·운영, 설치·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, 소금의 전자거래 활성화 추진</u>
<u><신 설></u>	<u>1의15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요청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시행 및 그 시책에 따라 해당 소금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</u>
<u><신 설></u>	<u>1의16. 법 제19조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의 장려 및 필요한 지원</u>
<u><신 설></u>	<u>1의17.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 및 필요한 지원</u>
<u><신 설></u>	<u>1의18.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 마련 및 그에 관한 고시, 안전성 조사, 조사결과와 통보 및 필요한 조치의 요청, 안전성 조사의 위탁 및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</u>
<u><신 설></u>	<u>1의19.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 지정·고시 및 그 지정의 해제</u>

<u><신 설></u>	<u>1의20. 법 제30조에 따른 안전 관리대책 수립·시행, 통보 및 필요한 조치의 요청</u>
<u><신 설></u>	<u>1의21.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</u>
<u><신 설></u>	<u>1의22.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, 판매금지 또는 표시 정지의 조치</u>
<u><신 설></u>	<u>1의23. (현행 제1호와 같음)</u>
<u><신 설></u>	<u>1의24.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지정, 검사실적 보고의 수리 및 자체규정 승인</u>
<u><신 설></u>	<u>1의25. 법 제36조에 따른 품질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사 업무의 정지 처분</u>
<u><신 설></u>	<u>1의26. 법 제3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제도의 실시</u>
<u>2.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우수 천일염생산기준 고시</u>	<u>2. 법 제39조제2항·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생산 기준 고시, 인증 신청의 접수, 교육훈련 및 필요한 기술·정보의 제공</u>
<u>3. ~ 4. (생 략)</u>	<u>3. ~ 4. (현행과 같음)</u>
<u><신 설></u>	<u>4의2. 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</u>

<u><신 설></u>	<u>에 따른 천일염인증 갱신신청의 접수·심사,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·심사·승인</u>
<u><신 설></u>	<u>4의3.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·지정, 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</u>
<u><신 설></u>	<u>4의4.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</u>
<u>5. ~ 7. (생 략)</u>	<u>5. ~ 7. (현행과 같음)</u>
<u><신 설></u>	<u>8. 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천일염인증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</u>
<u><신 설></u>	<u>9.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이용의 협조 및 자료·정보의 제공 요청</u>
<u><신 설></u>	<u>10.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출입·조사·점검·검사·수거 등(이 영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)</u>
<u><신 설></u>	<u>11. 법 제54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·운영 및 경비의 지</u>

<신 설>	급
<신 설>	12. 법 제57조제2호부터 제6호 까지에 따른 청문
<신 설>	13.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과 태료의 부과·징수(이 영에 따 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 만 해당된다)
<신 설>	14. 이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의 고시
<신 설>	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「정부조직법」 제6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때에는 그 내 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449